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920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
반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이로운(기소), 최은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은석(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 초과수수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원금을 2,000,000원으로 정하고 선이자 100,000원을 공제한 1,900,000원을 매일 원리금 40,000원을 65일간 분할 상환하는 연 이율 368% 조건으로 대부하고, 위 D으로부터 연 이율 20%를 초과한 이자 51,19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3. 4. 17.경부터 202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47,590,000원을 대부하고, 총 32회에 걸쳐 연 이율 20%를 초과한 이자 3,224,818원을 수수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광고 범행

대부업의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2023. 5. 15.경까지는 C과 공모하여, 2023. 5. 16.경부터 2023. 5. 22.경까지는 C,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파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사무실을 중심으로 한 파주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주택가 또는 시가지 등에 '돈 걱정 끝, 상담 먼저 해보세요,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길거리에 뿌렸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3. 3.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의 가입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약 30만 원에 구입하여 휴대폰 공기계에 삽입한 후, 피고인과 C은 파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2023. 5. 22.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의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A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3. 5. 16.경부터 2023. 5. 22.경까지 파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사무실을 중심으로 한 파주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주택가 또는 시가지 등에 '돈 걱정 끝, 상담 먼저 해보세요,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길거리에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광고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초과 수령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얻은 수익,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나이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판사 송병훈 _____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채무자	약정금(원)	선이자(원)	대출금(원)	일상환금(원)	상환횟수(일)	약정이율(%)	실제상환금(원)	초과수이자(원)
1	2023. 4. 17.경	G	1,000,000	-50,000	950,000	30,000	44	569	-	-
2	2023. 4. 17.경	H	5,000,000	-250,000	4,750,000	100,000	65	368	-	-
3	2023. 4. 17.경	I	2,000,000	-100,000	1,900,000	40,000	65	368	-	-
4	2023. 5. 12.경	J	2,000,000	-100,000	1,900,000	40,000	65	368	-	-
5	2023. 5. 19.경	K	3,000,000	-150,000	2,850,000	60,000	65	395	-	-
6	2023. 5.경	L	3,000,000	-150,000	2,850,000	60,000	65	395	-	-
7	2023. 5.경	D	2,000,000	-100,000	1,900,000	40,000	65	368	200,000	51,190
8	2023. 5.경	M	5,000,000	-250,000	4,750,000	100,000	65	368	200,000	51,188
9	2023. 5.경	N	4,000,000	-200,000	3,800,000	80,000	65	368	40,000	-
10	2023. 5.경	O	2,000,000	-200,000	1,800,000	40,000	65	395	-	-
11	2023. 5.경	N	3,000,000	-150,000	2,850,000	60,000	65	395	-	-
12	2023. 5.경	N	2,000,000	-100,000	1,900,000	40,000	65	368	-	-
13	2023. 5.경	P	1,500,000	-75,000	1,425,000	30,000	65	368	-	-
14	2023. 5.경	P	2,000,000	-100,000	1,900,000	40,000	65	368	-	-
15	2023. 5.경	Q	10,000,000	-500,000	9,500,000	200,000	62	325	-	-
16	2023. 5.경	R	1,000,000	-50,000	950,000	20,000	65	368	-	-
17	2023. 5.경	P	3,500,000	-175,000	3,325,000	70,000	65	368	-	-
18	2023. 5.경	P	1,000,000	-100,000	900,000	30,000	44	670	-	-
19	2023. 5.경	S	2,500,000	-125,000	2,375,000	50,000	60	292	800,000	156,032
20	2023. 5.경	T	1,000,000	-100,000	900,000	20,000	65	437	20,000	5,902
21	2023. 5.경	U	10,000,000	-500,000	9,500,000	200,000	60	292	1,600,000	312,048
22	2023. 5.경	T	1,000,000	-50,000	950,000	20,000	65	368	20,000	5,119
23	2023. 5.경	P	1,000,000	-50,000	950,000	30,000	44	569	-	-
24	2023. 5.경	N	3,000,000	-150,000	2,850,000	60,000	65	395	-	-
25	2023. 5.경	V	3,000,000	-150,000	2,850,000	60,000	65	395	-	-
26	2023. 5.경	W	1,000,000	-50,000	950,000	20,000	60	292	140,000	27,307
27	2023. 5.경	X	2,000,000	-200,000	1,800,000	40,000	62	395	160,000	41,856
28	2023. 5.경	Y	1,000,000	-100,000	900,000	30,000	44	670	210,000	65,044
29	2023. 5.경	Z	2,000,000	-200,000	1,800,000	60,000	44	670	540,000	167,265
30	2023. 5.경	AA	3,000,000	-210,000	2,790,000	60,000	65	395	180,000	48,888
31	2023. 5.경	AB	2,000,000	-200,000	1,800,000	60,000	44	670	-	-
32	2023. 5.경	AC	10,000,000	-500,000	9,500,000	200,000	60	292	800,000	156,024
33	2023. 5.경	AD	2,500,000	-125,000	2,375,000	50,000	65	368	-	-
34	2023. 5.경	AE	5,000,000	-250,000	4,750,000	100,000	65	368	500,000	127,970
35	2023. 5.경	AF	1,000,000	-50,000	950,000	30,000	44	569	240,000	65,136
36	2023. 5.경	AG	5,000,000	-250,000	4,750,000	100,000	65	368	800,000	204,752
37	2023. 5.경	AF	1,000,000	-50,000	950,000	30,000	44	569	300,000	81,420
38	2023. 5.경	AH	1,000,000	-50,000	950,000	20,000	60	292	140,000	27,307
39	2023. 5.경	AG	10,000,000	-500,000	9,500,000	200,000	65	368	1,600,000	409,504
40	2023. 5.경	AF	1,000,000	-50,000	950,000	30,000	44	569	300,000	81,420
41	2023. 5.경	AI	1,000,000	-50,000	950,000	30,000	44	569	210,000	56,994
42	2023. 5.경	AJ	2,000,000	-100,000	1,900,000	40,000	60	292	360,000	70,209
43	2023. 5.경	AF	2,000,000	-100,000	1,900,000	40,000	60	292	400,000	78,010
44	2023. 5.경	AG	5,000,000	-250,000	4,750,000	100,000	65	368	800,000	204,752
45	2023. 5.경	AG	5,000,000	-250,000	4,750,000	100,000	65	368	800,000	204,752
46	2023. 5.경	AF	1,000,000	-50,000	950,000	30,000	44	569	300,000	81,42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47	2023. 5.경	AE	1,000,000	-50,000	950,000	20,000	65	368	200,000	51,190
48	2023. 5.경	AF	2,000,000	-100,000	1,900,000	40,000	65	368	400,000	102,380
49	2023. 5.경	AK	1,000,000	-50,000	950,000	30,000	44	569	210,000	56,994
50	2023. 5.경	Z	2,000,000	-100,000	1,900,000	60,000	44	670	300,000	81,420
51	2023. 5.경	AE	5,000,000	-250,000	4,750,000	100,000	63	340	500,000	116,370
52	2023. 5.경	S	2,000,000	-100,000	1,900,000	40,000	60	292	50,000	9,361
53	2023. 5.경	AG	5,000,000	-250,000	4,750,000	100,000	65	368	100,000	25,594

총 53회에 걸쳐 합계 147,590,000원 대부하고, 총 32회에 걸쳐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3,224,818원 수취